

1.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? (2)

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

-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
-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

2. 다음 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준으로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? (3)

3.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? (4)

4. 옥내저장소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방출시키는 배출설비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? (3)

인화점이 70°C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강추어야 한다. 피리딘은 인화점이 20°C 인 제1석유류이다.

5. 다음 그림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를 개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. 창과 바닥으로부터 높이(a)와 하나의 창의 면적(b)은 각각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? (단, 이 저장창고의 바닥 면적은 150m^2 이내이다.) (3)

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

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,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$1/80$ 이내로 하고, 하나의 창의 면적을 0.4m^2 이내로 할 것

6. 위험물 옥내 저장소의 피로설비는 지정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인 저장 창고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가? (단,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.) (1)

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에는 피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.

7.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에서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m^2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? (3)

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

- 바닥면적 : $75m^2$ 이하
- 층고 : 6m 미만

8. 옥내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은? (4)

트리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자에 해당하므로 옥내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.

※ 바닥을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

- 제1류 위험물 종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
-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· 금속분 · 마그네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
-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